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2002
----------	-------

제출연월일 : 2014. 10. 6.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안 제360조의3 및 제530조의6 등)

- 1) 2012년 개정에서는 합병 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의 대가로 존속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삼각합병이란 A 회사의 자회사인 S 회사가 T 회사를 합병하면서 소멸하는 T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교

부하는 것을 말함.

-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고 이러한 삼각주식교환을 통하여 역삼각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며,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함.

※ 역삼각합병이란 A 회사의 자회사인 S 회사가 T 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T 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면서 T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는 것을 말함.

- 3) 자회사를 활용한 다양한 기업 인수·합병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경제적 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안 제360조의5제1항 및 제374조의2 등)

- 1) 현재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고, 무의결권 주주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2) 무의결권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 3)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무의결권 주주의 반대주주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주주총회 소집통지 문제 등에 관한 법적 혼란을 해소함으로써 기업 인수·합병 거래 안정과 반대 주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등(안 제360조의10제1항 및 제527조의3제1항 등)

1) 2012년 개정 시 소규모합병의 요건은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기능·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소규모 주식교환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합병이나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에 관해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음.

2) 신주 발행과 자기주식의 교부를 포함하여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규정하고, 소규모 주식교환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이용한 기업 인수·합병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주식교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의 도입(안 제374조의3 신설)

1)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주식 90퍼센트 이상을 그 거래의 상대방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의사결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 조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회사의 분할·합병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530조의5 등)

회사의 분할 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로, 분할을 통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분할신설회사로, 분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로, 분할신설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분할 시 자기주식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회사 분할 관련 제도를 정비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0조의2제2항 중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를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로 한다.

제360조의3의 제목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종류와”를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종류,”로, “신주의 배정”을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을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360조의3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360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360조의5제1항 중 “주주는”을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으로 한다.

제360조의6을 삭제한다.

제360조의7제1항제1호 중 “지급할 금액”을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로,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을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60조의10제1항 본문 중 “발행하는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으로,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하고, 같은 항 단

서 중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를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로, “100분의 2”를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60조의14제3항 중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주식”을 “이전한 자기주식”으로 한다.

제360조의16제1항제4호 중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60조의18 중 “지급할 금액”을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363조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4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으로 한다.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3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2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22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522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2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52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2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제527조의3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0조의5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30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설립되는 회사”를 각각 “단순분할신설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設立되는 會社の 定款”을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으로 한다.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의2. 분할을 할 날

9.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530조의6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5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가 分割合併으로”를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로, “株式의 總數”를 각각 “주식의 총수”로, “株式의 數”를 “주식의 수”로 한다.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30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の 定款變更”을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으로 한다.

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0.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제5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30조의6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제530조의6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30조의7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

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30조의7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승계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53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30조의7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제530조의8을 삭제한다.

제530조의9, 제530조의10 및 제6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 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0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5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530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권 없는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3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74

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매수 청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생략)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②-----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		-----		
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		-----		
사의 주주가 된다.		-----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 ②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		
(생략)		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		
③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		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생략)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등) ① ·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		
		----- 신주를 발		

<u>신주의 총수·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u>	<u>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종류, --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u>
3. <u>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u>	3. ----- <u>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u>
4. <u>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u>	4. <u>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u>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u>	<u><삭 제></u>
9. (생략)	9.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u>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u>

<신 설>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이사는 제360조의3제1
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부터 주식교환의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
다.

1. (생 략)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
면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
합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⑦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6항에 따라 취득한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
여야 한다.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①-----

--.

1. (현행과 같음)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신주를 발
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
는 경우에는 완전자회사가 되
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

3. (생략) ② (생략)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①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60조의6(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제3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	<u>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①----- ----- ----- ----- <u>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u>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삭제></u>
---	--

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
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
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
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
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
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
장부가액의 합계액

② (생략)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
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
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

1. -----
-----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2. 제360조의3제3항제2호에 따
라 -----
-----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② (현행과 같음)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
-- 100분의 10을 -----

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제36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로 본다.

③ ~ ⑦ (생략)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② (생략)

③ 주식교환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한 신주 또는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

④ (생략)

---. -----

-----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

----- 100분의 5-----

-----.

<삭 제>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전한 자

기주식-----

-----.

④ (현행과 같음)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

----- 제공할 금전 및 그 밖
의 재산의 가액-----.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다만, 제1항의

第374條의2(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 ①第37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事項에 반대하는 株主는 株主總會전에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決議에 反對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總會의 決議日부터 20日내에 株式의 종류와 數를 기재한 書面으로 會社에 대하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②會社는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날부터 2月 이내에 그 株式을 買受하여야 한다.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

-----.

⑤ (현행과 같음)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제3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

<u>第522條의2(合併契約書 등의 公示) ①理事는 第522條第1項의 株主總會 會日の 2週전부터 合併을 한 날 이후 6月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各號의 書類를 本店에 비치하여야 한다.</u> 1. (생략) 2. <u>合併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の 株主에게 발행하는 株式의 配定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書面</u>	<u>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公示) 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u> 1. (현행과 같음) 2. <u>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u>
--	--

3. (생략) ② (생략) 第522條의3(合併反對株主의 株式 買受請求權) ①第5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議事項에 관하여 理事會의 決議가 있는 때에 그 決議에 反對하는 株主는 株主總會전에 會社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決議에 反對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總會의 決議 日부터 20日 이내에 株式의 종류와 數를 기재한 書面으로 會社에 대하여 자기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u>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 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第523條(吸收合併의 合併契約書)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생략)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	② (현행과 같음)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 ----- -----. 1. (현행과 같음)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

<u>본금과 준비금의 총액</u>	<u>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u> <u>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u> <u>금에 관한 사항</u>
<u>3. 存續하는 會社가 合併當時에</u> <u>發行하는 新株의 總數, 種類와</u> <u>數 및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u> <u>하는 會社의 株主에 對한 新</u> <u>株의 配定에 關한 事項</u>	<u>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u> <u>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u> <u>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발</u> <u>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u> <u>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u> <u>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u> <u>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u> <u>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u> <u>관한 사항</u>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 식인 경우의 특칙) (생략)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 식인 경우의 특칙)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설></u>	② 존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 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 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u>第524條(新設合併의 合併契約書)</u> 합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 을 적어야 한다.	<u>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u> ----- ----- -----.

1. ~ 3. (생략)

4. 各 會社의 株主에게 支給할 金額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5. 前條第5號와 第6號에 揭記한 事項

6. (생략)

第527條의3(小規模合併) ①合併후 存續하는 會社가 合併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新株의 總數가 그 會社의 發行株式總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存續하는 會社의 株主總會의 승인은 이를 理事會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合併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存續하는 會社의 최종 貸借對照表상으로 現존하는 純資産額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각 회사의 주주에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제523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6. (현행과 같음)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530條의4(分割에 의한 會社の
設立) ①이 章 第1節의 會社設
立에 관한 規定은 第53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會社の 設立에 관
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分
割에 의하여 設立되는 會社は
分割되는 會社の 出資만으로도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分割되
는 會社の 株主에게 그 株主가
가지는 그 會社の 株式의 比率
에 따라서 設立되는 會社の 株
式이 발행되는 때에는 第299條
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30條의5(分割計劃書의 기재사
항) ①分割에 의하여 會社를 設
立하는 경우에는 分割計劃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設立되는 會社の 商號, 目的,
本店의 所在地 및 公告의 방
법
2. 設立되는 會社가 발행할 주
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
면주식의 구분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
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
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
(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
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
항) 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
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
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
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단순분할신설회사-----

3. <u>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u>	3. <u>단순분할신설회사</u> ----- ----- -----
4. <u>分割되는 會社の 株主에 대한 設立되는 會社の 株式의 配定에 관한 사항 및 配定에 따른 株式의 병합 또는 分割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u>	4. <u>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u>
5. <u>分割되는 會社の 株主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規定</u>	5. <u>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u>
6. <u>設立되는 會社の 자본금과 準備金에 관한 사항</u>	6. <u>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u>
7. <u>設立되는 會社에 移轉될 財産과 그 價額</u>	7. <u>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u>
8. (생략) <u><신설></u>	8. (현행과 같음) 8의2. <u>분할을 할 날</u>
9. <u>設立되는 會社の 理事와 監事를 정한 경우에는 그 姓名과 住民登録番號</u>	9. <u>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u>
10. <u>設立되는 會社の 定款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u>	10. <u>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u> -----

② (생략)

第530條의6(分割合併契約書의 기재사항) ①分割되는 會社의 일부가 다른 會社와 合併하여 그 다른 會社(이하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라 한다)가 存續하는 경우에는 分割合併契約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가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발행할 株式의 總數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株式의 總數, 종류 및 종류별 株式의 數
2.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가 分割合併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新株의 總數, 종류 및 종류별 株式의 數
3. 分割되는 會社의 株主에 대한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의 株式의 配定에 관한 사항 및 配定에 따른 株式의 併合 또

② (현행과 같음)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 -----
주식의 총수-----
----- 주식의 총수---
----- 주식의 수
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

<u>는 分割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에 관한 사항</u> 4. <u>分割되는 會社の 株主에 대 하여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 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 는 그 規定</u> 5. <u>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の 증가할 資本의 總額과 準備金 에 관한 사항</u> 6. <u>分割되는 會社가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에 移轉할 財産과 그 價額</u> 7. ~ 9. (생략) 10. <u>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の 理事와 監事를 정한 때에는 그 姓名과 住民登録番號</u> 11. <u>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の 定款變更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u> ②<u>分割되는 會社の 일부가 다른</u>	<u>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 항</u> 4. <u>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 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u> 5. <u>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u> 6. <u>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u> 7. ~ 9. (현행과 같음) 10. <u>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 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u> 11. <u>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 ----- -----</u> ②<u>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u>
---	---

會社 또는 다른 會社의 일부와
分割合併을 하여 會社를 設立하
는 경우에는 分割合併契約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생략)

2. 設立되는 會社가 分割合併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株式의
總數, 종류 및 종류별 株式의
數

3. (생략)

4. 각 會社가 設立되는 會社에
移轉할 財産과 그 價額

5. ~ 7. (생략)

③ (생략)

<신설>

<신설>

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
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
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현행과 같음)

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
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42조의2제1항에도 불구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분할회
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
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⑤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
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
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第530條의7(分割貸借對照表 등의

公示) ①分割되는 會社の 理事는 第5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株主總會의 會日の 2週전부터 分割의 登記를 한 날 또는 分割合併을 한 날 이후 6月間 다음 各號의 書類를 本店에 비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分割合併의 경우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の 貸借對照表

4. 分割되는 會社の 株主에게 발행할 株式의 配定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書面

②第530條의6第1項의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の 理事는 分割合併을 승인하는 株主總會의 會日の 2週전부터 分割合併의 登記를 한 후 6月間 다음 各號의 書類를 本店에 비치하여야 한다.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분할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승계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생략)

2. 分割되는 會社の 分割되는
부분의 貸借對照表

3. 分割되는 會社の 株主에게
발행할 株式의 配定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書面

③ (생략)

第530條의8(分割 및 分割合併에
관한 計算) 分割 또는 分割合併
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 또
는 分割合併의 相對方 會社가
營業權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取得價額을 貸借對照表의 資産
의 部に 計上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設立登記 또는 分割合併
의 登記를 한 후 5年내의 毎 決
算期에 均等額 이상을 償却하여
야 한다.

第530條의9(分割 및 分割合併후의
會社の 責任) ①分割 또는 分割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
또는 存續하는 會社は 分割 또
는 分割合併전의 會社債務에 관

1. (현행과 같음)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
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
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
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
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

하여 連帶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分割되는 會社가 第530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議로 分割에 의하여 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設立되는 會社가 分割되는 會社의 債務중에서 出資한 財産에 관한 債務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分割되는 會社가 分割후에 存續하는 때에는 分割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債務만을 부담한다.

③ 分割合併의 경우에 分割되는 會社는 第530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議로 分割合併에 따른 出資를 받는 存立 中の 會社가 分割되는 會社의 債務 中에서 出資한 財産에 관한 債務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2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439條第3項 및 第527條의5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u>第530條의10(分割 또는 分割合併의 效果) 分割 또는 分割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會社 또는 存續하는 會社는 分割하는 會社의 權利와 義務를 分割計劃書 또는 分割合併契約書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承繼한다.</u> <u>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u> <u>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1.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u> <u>2. 제360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u> <u>3. 제5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u> <u>4. 제530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u>
--	--